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서울

2017. 9. 21. 목 오후3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 공동주최 : 희망제작소, 시민사회활성화 전국 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주관 : 서울시NPO지원센터

프로그램

[인사하기]

사회 김종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관)

임현진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물꼬트기]

 # 문재인 정부 국정 비젼과 시민사회협력 과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생각 나누기]

사회 이충 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상훈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 이사)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생각 모으기]

종합토론

물꼬트기

문재인 정부 국정 비젼과 시민사회협력 과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문재인정부 정부 출범과 시민사회의 과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제I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100대과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문재인정부의 역사적 의의

- **정권교체**
  - 10년만의 (상대적) 진보세력으로의 정권교체
- **시대교체**
  - 훼절된 민주주의의 복구
  - 양극화와 파탄으로 점철된 민생의 회복
  - 산업화(-1980s) -> 민주화(1990s) -> 신자유주의(2000-2016) -> ?
- **미래교체**
  -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의 대전환

문재인정부의 시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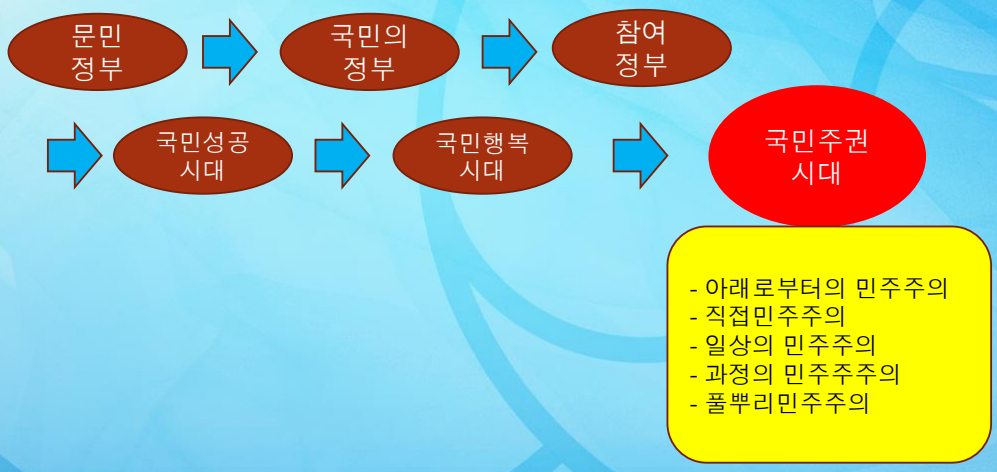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 the nation
  -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한 원동력으로서의 촛불 민심
  - 국민의 직접적 참여와 주권 실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정의 the justice
  - 정치, 사회, 경제적 적폐청산
  - 불평등, 갑을사회, 특권반칙으로부터 정의의 사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제II부

시민사회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내용은?

문재인정부와 시민사회의 접합 지점

- 자치와 분권
- 협치
- 인권
- 민주주의
- 복지국가

1. 시민사회의 토대 강화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설치
  - 민주시민 교육체계 수립 : 민주화사업기념회 산하 민주시민교실 또는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도 강구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의 민간화 및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 기부금 모집 등록 사업 확대 및 등록기관 확대
  - 자원봉사 및 기부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

2.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관련 국정과제

2-1. 청렴사회의 동반자
2-2. 정부와 사회혁신의 협치자
2-3.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의 감시자
2-4.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의 주역
2-5. 주민 삶을 지키는 옹호자
2-6. 자치/분권의 실현자
2-7. 재정분권의 감시자 및 집행자

2-1. 청렴사회를 위한 동반자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 '17년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19년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 평가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국무총리 산하 설치
  - 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와 감독 강화.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방지

- 국민소송제
  -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와 관련하여 국민이 손해의 예방이나 시정,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법률 제정 뒤 시행)

2-2. 정부와 사회 혁신의 협치자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소통, 협력의 사회혁신
  - 사회혁신관련 기본법(가칭) 제정('18)
  - 민간중심의 사회혁신기금 조성('19)
    :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개인 등 사회혁신프로젝트 수행 위한 재정 지원
  - 민간주도의 사회혁신조직인 사회투자재단 신설('19)
    : 사회혁신기금 운용, 사업 발굴 등 지원체계 구축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사회혁신 포털을 통한 혁신사례 확산 및 공유, 정부와 사회혁신가 간 프로젝트 매칭
  - 민간 사회혁신 주체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 사회혁신 아카데미 등 교육 확대
  -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벤처형 협업조직 G-Lab 도입
    : bottom-up 방식의 공무원-사회혁신가의 협업 장려
  - 민간과 지자체의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정부지원 상의 복잡한 절차, 형식, 및 자격요건 완화, 경상보조사업에서의 인건비 지급 허용, 동 주민센터에 민간사무국장 설치 및 권한 부여 등

2-3.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의 감시자

국정과제 25. 공정거래 감시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분야로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18)
  - 다수 소비자의 피해 발생 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

국정과제 28.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골목상권 보호
  -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상권 내몰림방지법 제정 및 지역낙후상권개발사업 도입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과밀업종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
  -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2-4.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의 주역

➨ 국정과제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 시민참여형 사회혁신기금 조성
  - 사회투자펀드, 사회적 기업 모태펀드 등 조성
  - 사회적 경제 학습사회 구축 등 인재양성 지원
  - 유휴국공유시설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위한 정부공유플랫홈 개발

➨ 국정과제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지역 역량 강화
  - 주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 운영하여 뉴딜사업을 위한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지역재생사업 컨설팅

2-5. 주민 삶을 지키는 옹호자

◆ 국정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철폐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기초연금, 일자리 확충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
- 의료비의 본인부담 완화
- 정신건강 증진체계 확립
- 지역내 의료 격차 해소
- 의료공공성 강화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읍면동 주민센터 혁신 .. 등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
- 학대아동 등 아동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가동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 온종일돌봄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수요 충족
- 유아 및 초등학생의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 혁신학교 확산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장애인, 다문화, 탈북학생)
- 거점 국립대, 지역 강소대학 육성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
- 비리대학 등 재정지원 중단.... 등

전략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취약계층 중심의 교통정책
- 소방인력 등 주민생활서비스 인력 확충 및 근무조건 개선
- 생활주변 위해 및 불편 적극 해소
- 먹거리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구현(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 오염우심지역 민감계층 보호 강화
-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동물복지를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 4대강 재자연화
- 탈원전
- 온실가스 감축 강화..... 등

전략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중소, 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 체불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
- 비정규직 차별시정
- 감정노동자 보호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 다문화 가족 지원
- 성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젠더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등 3대 폭력 방지 ….. 등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국민기초문화생활보장
- 지역간 문화 균형 발전
- 예술인 복지 강화
- 문화옴부즈맨 제도 도입
- 지역방송 활성화
- 주 52시간 근로 확립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개선…. 등

2-6. 자치/분권의 실현자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 국가기능 지방이양
  - 기능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18)
  - 일자리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 큰 기능 중심의 이양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발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
  -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투표율 기준 완화
  - 주민투표 발의 주체 및 적용대상 확대
    ;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표 허용
  -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확대
- 마을자치 활성화
  -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 주민중심의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읍면동 체제 구축('17)
  -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을리더, 지역주민 등의 역량 강화 및 지원

2-7. 재정분권의 감시자 및 집행자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국민감시단 확대, '행사 및 축제예산 총액한도'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지자체 핵심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주민참여범위 확대(시행 및 사후점검 포함)를 위한 법령 개정,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모형 개발
  -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국가사업 참여

<잠정적 평가>

1) 시민사회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수단의 모호

; 아직 구체적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시민사회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들이 없어 여전히 추측과 가능성의 차원에 국한

2) 중앙정부 차원의 의제와 추진의도라는 한계

;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협력이라는 의지가 지방정부 단위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지역 시민사회단체에는 괴리감 존재할 수 있음

3)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상 한계

; 공약수립이나 국정기획자문위 활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취합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 상존

4)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태도의 변환에 대한 의지 부재

; 시민사회와 공공의 거버넌스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나 태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데에서 오는 실효성은 여전이 시기상조

제III부

시민사회의 고민 지점은?

이제는 '시민사회'다! – 시민사회의 과제

- 2017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갖는 의의의 재설정이 필요

1) 보편적 복지국가체제 구축 상의 딜레마 극복

- 복지국가의 시민적 주체세력 확보 + 복지국가의 과잉화("시민은 없고 국가만 있다") 견제라는 동시과제 이행

* NHS인가? 의료생협운동인가?

2) '시민 이니셔티브'의 민주주의 구축

- 위임 이상의 정치 참여 -> 시민 이니셔티브

* 시민 이니셔티브의 시대 : 사회문제의 복잡성, 집단 지성, 인간적 통치의 가능성 등..

-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Waiting for the Government"하지 않고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하려는(Self-Activating. 자기 활성화) 시민들의 공공적 에너지, 네트워크, 그 참여 과정이 중요

한국 시민사회계의 현주소

- 시민사회 단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사이의 괴리

  -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양적 숫자나 활동 분야는 매우 증대하고 다양화되었으나 각 단체의 재정적, 조직적, 인적 안정화는 취약한 편임.

- 시민사회의 대 사회적 영향력 감소 내지 지체

  - 한때 민주화운동과정과 직후에 보여주었던 의제설정(agenda setting) 및 의제선도 기능이 약화되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지 않음.

-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대한 한계

  -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사업 위탁을 받아 인적, 재정적 운영기반으로 삼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부로부터 회계와 재정운영 상의 피감기관이 되는 아이러니에 직면

-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권 견인 사이의 딜렘마에 함몰

  - 정치가 갖는 중대성을 비추어볼 때 정당이나 정치인들과의 적극적인 관계설정이 절실하나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내부 논리에 함몰되어 선거 국면과 정치적 요동기에 시민사회의 존재감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딜렘마 존재

- 시민사회의 재생산구조 미약

  -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 확보와 역량 제고, 인적 순환 등에 대한 기전이 미흡하여 시민사회의 고령화, 빈번한 인적 교체,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반복

문재인정부 하에서 시민사회계의 질문

Q1. 문재인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가?

Q2. 정부 내지 사회혁신의 '홍위병'이 아니면서도 한국사회 발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Q3.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적 시민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기동안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Q4. 국가적 의제가 아닌 지역의제에 대응하는 지역시민사회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물꼬트기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시 민 사 회 활 성 화 과 제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활성화 간담회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0. 들어가기전에

촛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정부실패

- 이해관계의 상충, 정치적 타협
- 제한된 정보에 따른 결정, 한정된 예산
- 관료제 심화, 규제 남용

시장실패

- 불완전 경쟁에 의한 독과점
-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음
- 치안, 소방 등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시민사회실패

- 재원과 서비스의 불충분성
- 비전문성, 분파주의(특정대상 집중 혹은 배제)
- 기부자의 관심사에 우선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해진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존재목적을 이윤추구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으로 확장

더 이상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제기를 넘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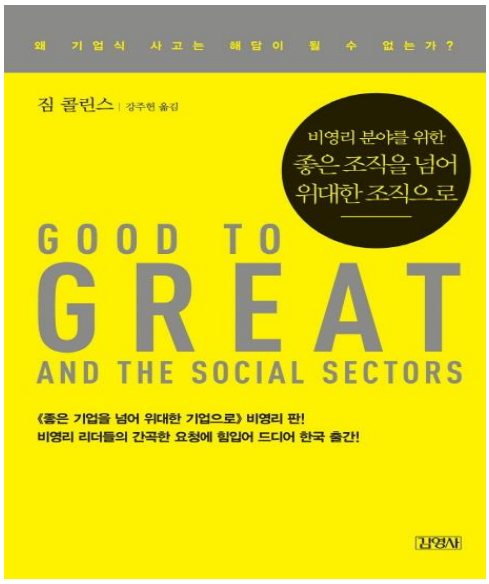

짐 콜린스

"우리에게 위대한 기업만 있다면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경쟁력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회를 건설할 위대한 비영리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사회조직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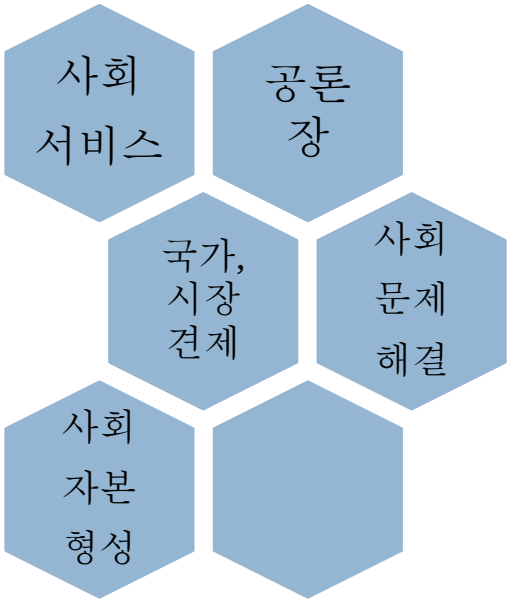

시민사회 활성화란!

"시민들이 관심사를 나누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실천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전문가와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시민에게 되돌리고, 행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돕는 시민사회조직의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

핵심질문

- 공익추구를 위한 국가-시민사회 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 스스로 자기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어떻게 사회변화의 핵심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 전문화되고 분절화된 시민사회조직이 “무엇을 위해” “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 사회변화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국가·시민사회

1단계
-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사회서비스 제공, 공익활동 시민참여 촉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과 보조금을 통한 지원 (지원대상/ 투명성 감시)

2단계
- 정부정책설계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
-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를 운영 (의견수렴 창구)

3단계
- 사회문제해결의 핵심적 파트너
- 지원과 의견수렴을 넘어 사회문제해결과 공공서비스제공의 중요한 주체

무엇이 문제인가? - 시민

□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동료시민을 만나
다양한 실천과 실험을 할 수 있는 장과 기회 확대

□ 직접민주주의 기반 확산
:시민이 계획을 세우고 행정이 뒷받침
: 주민참여예산제
: 마을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시민사회조직

- 견제와 감시/사회서비스 제공 및 전달의 파트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을 만드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
- 복잡한 사회문제는 섹터간(영역간) 협업, 다양한 실험, 장기지속성, 스케일업 등을 필요로 함. => 재원의 규모화, 사회적 인프라 활용, 시민참여기반 확대

무엇이 필요한가?

-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이를 통해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정부와 사회운영의 핵심원리가 되게 하는 것
-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에 훨씬 많은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필요. 수많은 새로운 공익생태계 활성화를 촉진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이를 담는 최소한의 그릇이자 출발

Ⅰ. 경과 및 기본방향

1. 경과 - 시민사회활성화 법제개선위원회

- 2016년 5월 4일 - 2016년 6월1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TF’ 4차례 모임

- 2016년 6월30일 - 11월15일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로 확대 4차례 모임

- 2016년 6월1일,7월19일,11월15일

‘시민사회활성화 집담회’ 3회 개최

*간사단체 : 사단법인 시민

2. 경과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정책 네트워크

- 2017/3/22 구성
- 참가단체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지역 자활센터협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자원봉사 이음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대선 정책 제안서 (10대 정책과제) 발표 (2017/4/5)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더혁신(공동위원장 하승창, 조현옥)과 정책 간담회 (2017/4/6)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박주현 의원)와 정책 간담회(2017/4/21)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 시민사회관련 공약반영 (2017/5)

*간사단체 : 사단법인 시민

3. 경과 - 시민사회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 2017/6/7 구성
- 참가단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 제안 (2017/6/9)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활성화 순회간담회

대구 7월31일/강원 8월22일/충북 8월23일/대전 8월24일/충남 8월29일/부산 8월30일/광주 9월5일/전북 9월6일/경기 9월15일/서울 9월21일

- 네트워크 확대 (지역/ 영역)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지역재단협의회

4. 경과 - 국정과제

번호	10대 과제명	국정과제 제안	국정과제
1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제정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 조직 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2	시민사회 협치를 위한 시민사회처 설치	독립적 민관거버넌스 기구 설치	
3	소득세1% 기분처 직접 선택으로 납세자 주권 강화	논의 필요	
4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제도 혁신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출	- 공익위원회
5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기부금품법 개정안 제출	기부문화 활성화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 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6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	공제회법 발의안에 대한 대응	
7	제3섹터 성장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금융활성화	사회혁신 기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사회혁신기금, 사회혁신기본법(가칭)
8	시민을 위한 공유재로 공공유휴시설 활용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사회적 경제
9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익적 일자리 확대	논의 필요	사회서비스공단, 청년고용의무제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10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쇄신	논의 필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확대 * 국민참여예산제

5. 시민사회발전TF

□ 구성

-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행자부 민간협력과
- 시민사회(전문가, NGO, 자원봉사, 마을)

□ 의제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 기부활성화
- 보조금제도 개선

제정 방향

- 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지원을 체계화
-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하게 분화하는 시민사회영역을 포괄
- 민관협력과 지원법의 기본법 위상으로 기금 조성, 전담지원기구등 인프라 구축과 실효적인 지원체계 구축

II. 제정 취지

1. 제정배경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과 보조금집행 근거법

- 공익법인법등, 비영리 사단, 재단설립관련법은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에 대해 규제중심의 접근

-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에 공익증진을 위해 좀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서 시민사회활력증진

=>시민사회 성장이 공동체 발전의 핵심 전략

2. 공익 증진 - 목적

-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수행의 목표를 공유.

-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한정된 정부예산과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과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호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공익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

3. 공익의 정의

-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복지권 등 사회적 권리 증진 및 옹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와 삶의 질 개선
- 여성·장애인·이주자·난민·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육성
-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
-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
-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
-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
-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국제개발협력
-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권익 증진
-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권 보호

4.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평가 등을 시민사회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참여민주주의 기반 확보

5. 쟁점

- 국가-시민사회와의 협력필요성과 방향

: 그동안 협력 기제에 대한 평가

: 어떤 권한이 , 어떤 방식으로 시민에게 위임되어야 하는가?

- NPO가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일부로 통합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

: 영국 캐머런 정부(보수당)의 빅소사이어티

참고 –영국 국가-시민사회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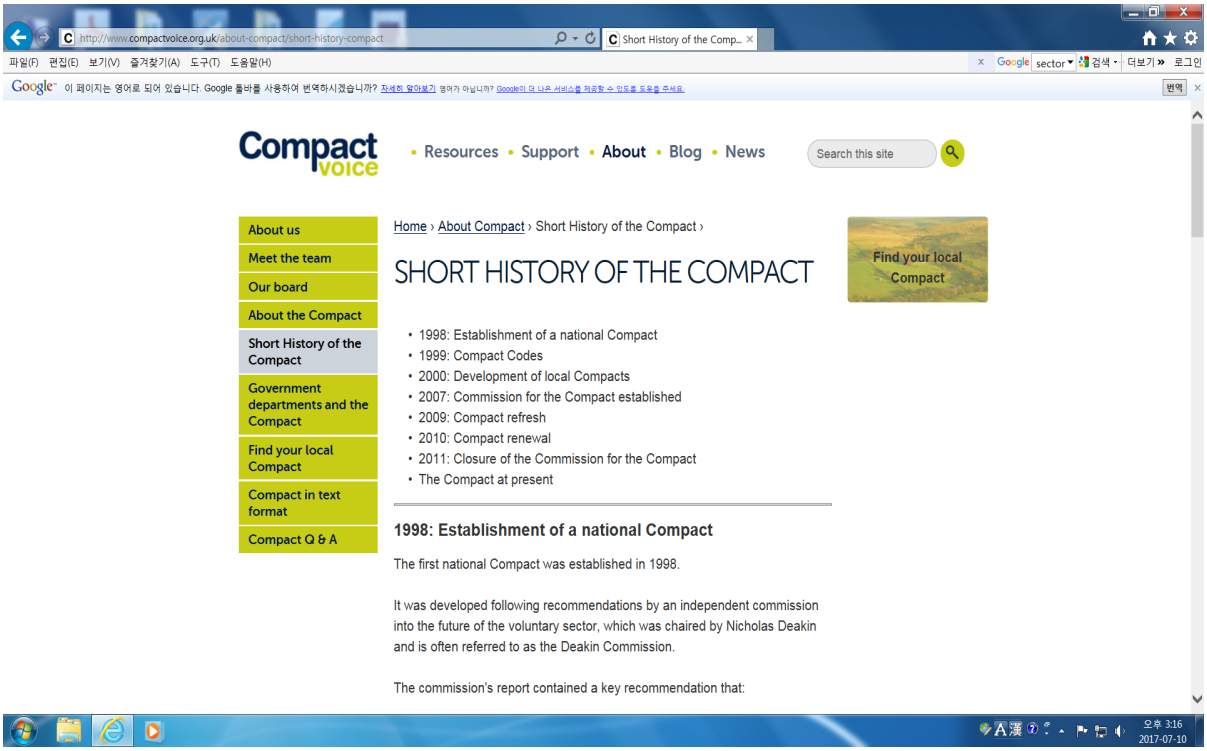

협약의 목적

An effe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will help achieve the following outcomes:

1. A strong, diverse and independent civil society
2. Effective and transparent design and development of policies, programmes and public services
3. Responsive and high-quality programmes and services
4. Clear arrangements for managing changes to programmes and services
5. An equal and fair society

Compact 집행의 관리감독

1) Compact Voice는 Compact의 시민사회측의 목소리를 수렴, 전국 시민사회조직을 대표하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에 신설된 독립기관으로, 시민사회조직들이 공공기관들과 공조하도록 지원 역할.

2) 총리실(Cabinet Office)이 정부 부처별 Compact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청(Office of Civil Society)이 전담기관 역할.

3) 모든 정부부처가 Compact 전담관(Compact lead)을 두어, 부처내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

4) Compact Voice와 Cabinet Office가 공동 작성한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에 따라 부처별 Compact leads의 역할이 부여. 양측이 매년 공동행동계획을 작성, 실천.

5) Compact leads, Compact Voice, Cabinet Office 삼자가 분기별 회의를 갖고 Compact를 점검, 토의.

Ⅲ. 규율 대상

1. 정의

- “공익”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사회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
-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비영리 활동 영역을 말한다
- “시민사회조직”란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단체, 모임 등의 조직

2. 규율대상

- 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 마.「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바.「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아.「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인가받은 단체
-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차.「마을공동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 카.「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타.「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 파.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쟁점

- 규율대상
  - 사회적 경제조직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협동조합만 포함
- 기본법이 있거나 (자원봉사) 만들어질 예정인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관계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를 어떻게 법에 담을 것인가?

Ⅳ. 법의 위상

1. 민관협력 및 지원의 기본법

<기본원칙>

- 공익활동 수행과 조직 참여에 있어 비차별과 자발적 참여보장
- 시민사회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민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에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
-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각종 지원이 지역 시민사회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의 기본원칙 천명

-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특정 단체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민 공익활동의 다양성, 자발성, 시민사회조직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시민사회조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원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지원의 실효성

- **(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 **(우편요금, 통신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이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통신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지원
- **(모금·홍보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이 시민 공익활동 수행과 관련한 모금 및 사업, 단체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법 제70조 제3항, 제8항에 따라 운용되는 공공채널, 공익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

-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조직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공익활동과 시민사회조직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성장·
- 발전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 (민주시민교육 근거)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법인에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쟁점

- 정부지원과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간접비, 인프라지원, 역량강화지원

- 지원에 관한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하여 보완
- 세법 개정 보완

*권미혁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발의(2016.8.30)

Ⅴ. 추진체계

1.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 공익증진 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과 결과의 보고
- 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재단의 설립과 운영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 방침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한 정책. 법제도 과제 발굴과 관련 제도 정비
- 시민사회 정보 공개 및 활용

구성

- 구성

1. 정부위원 :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전문가위원 :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민간, 민간이 3/5 이상

2. 지역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역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성장·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④ 그 외 시·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기본계획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작성
- 시행계획은 매년 유관 부처가 작성

1.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방법
2.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3. 시민공익활동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책과 수단
4.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한 활동가,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제도 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 주요 추진과제

4. 쟁점

- 위상

국무총리실(대통령) 산하 독립행정위원회 VS심의의결기구

- 독립성 보장

-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수립 및 모니터링 방식

- 시민사회 영역 대표성이 반영되는 구조
-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사무국)
- 지역에서 통합적인 위원회 구축 가능성
  (지역의 민관정책테이블 발전)

- 각 영역 협의체의 대표로 구성

- 시민사회단체/환경, 여성, 권력감시 등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조직
- 소비자단체/국제개발협력단체
- 민간 모금/배분재단
-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의 경우)
- 민간 관련 연구소, 학회
- 지역 대표성

-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시.군.구 등 아래로 부터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본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링, 진단과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식과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정부측과 시민사회 조직이 각각 독립적인 공익 증진과 시민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고 확정

참고

국가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정부 + 시민사회 협의체, 대통령 소속)	
정부 분과위원회 **정부(총리실)**	**시민사회 분과위원회** 시민사회(전국네트워크)
지역공익증진위원회 (지자체 + 지역시민사회 협의체)	
공익증진 담당관 (공공기관에 임명)	**공익증진 추진단** (시민사회 자율)
공익증진기금 (정부 + 시민사회 공동사업 공모)	

Ⅵ. 지원전담조직 및 기금

1.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

- 위상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 전담 기구

- 재단법인

- 정부출연

주요역할

-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금의 운영·배분
- 지역지원재단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지역 지원조직

- **(지역지원조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 센터 등 시·도 지원조직을 설치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에 따른다.

3. 시민사회공익증진기금

- 재원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 전입금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쟁점

- 관련 기본법 제정.개정시 지원전담조직과의 관계 (마을진흥조직, 자원봉사진흥조직 등)
- 지역의 분야별 지원조직과의 연계 (NPO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등)
- 사회혁신기금과의 관계
- 분야별, 지역별 배분 파트너 협력체계 구축
- 출연기관/ 민간독립기관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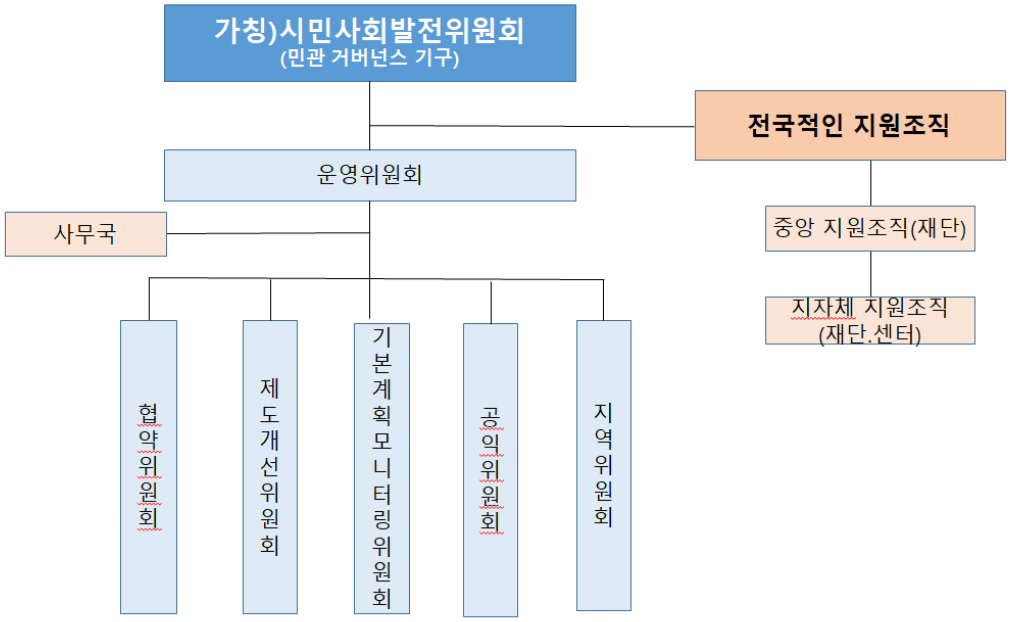

Ⅶ. 입법추진전략

1. 입법 환경

□ 긍정적인 측면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전국적이고 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의 관심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부정적인 측면

- 국회 입법 환경 (자유 한국당)
- 차기 총선(2020년) 의석변화

2. 시민사회 주체

- 아래로부터의 공론화 과정과 이견의 조정
- 다양한 영역간, 지역간 논의와 조직화 주체를 만드는 과정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핵심역할/ 네트워크 조직의 힘이 관건

- 물리적 시간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 필요

3. 추진전략

- 차기정부에서 시민사회청을 비젼으로.
- 시민사회의 분절화를 뛰어 넘는 조직화를 핵심전략으로.

-2020년 과제로 놓고 충분히 숙성시킬 것인가?
-정권초기 핵심적인 목표를 놓고 절충할 것인가?
-이럴 경우 핵심적인 성취 목표를 무엇으로 할것인가?
- 2017년 10월 정기국회 발의가 가능한가?

감 사 합 니 다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호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사회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한다.

가.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나.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복지권 등 사회적 권리 증진 및 옹호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와 삶의 질 개선
라. 여성·장애인·이주자·난민·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육성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바.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
자.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또는 국제개발협력 증진
차.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 보호
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권익 증진
파.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권 보호
하.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비영리 활동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조직”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단체 모임 등의 조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아.「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인가받은 단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차.「마을공동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파.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조(기본원칙)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통한 다음 각 호를 추구한다.

1.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참여
2.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호협력 강화
3. 시민사회조직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 및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민사회조직

운영을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며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시민사회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공익활동 또는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특정 단체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민 공익활동의 다양성, 자발성, 시민사회조직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시민사회조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지원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각종 지원이 지역 시민사회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①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민관협력(이하, '민간협력'이라 한다)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제13조 시행계획
(2. 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예산 등의 확대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5. 제10조에 따른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조직의 공익증진 성과 평가 및 우수사례 공시와 연례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 조성과 기금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에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권고
10. 시민사회조직 관련 각 행정기관의 정보 취합 및 공개
12. 시민사회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제12호 시민사회종합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을 합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민간위원의 수가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정부위원 :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조직 또는 시·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1인으로 하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 내에 정부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등의 소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시·도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시·군·구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그 외 지역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시민사회조직의 협의체, 지역 시민사회조직 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 지원
2. 제4조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3.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금의 배분
4. 제11조에 따른 지역지원조직 및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5.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6. 시민의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7.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사회조직 관련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8.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9. 시민사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서 재단이 하도록 정한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재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 지원조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 센터 등 시·도 지원조직을 설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익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약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3. 시민사회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수단
4. 시민사회 관련 통계 및 정보 수집과 제공
6.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제도 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9.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 주요 추진과제
1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 중심의 민관협력과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해당 시·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도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

제15조(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 기금의 조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 전입금)
4.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업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산하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3.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기획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의 운영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관리하되,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시민사회조직 지원 및 육성

제19조(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조직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과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법인에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 및 교육기관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설립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재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 대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 대표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은「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시한)

생각 나누기

사회 이충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상훈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 이사)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부록

1. 중소 공익법인 세법 개정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기부활성화에 대한 시민사회의견
4. 보조금 제도 혁신 시민사회의견

<부록1>

중소 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안

2017. 8. 18.

1. 법인세 비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좌동)	- 많은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바자회(기증물품, 조리음식 등 판매), 문화행사(후원의 밤), 교육사업, 홍보용 상품(머그, 달력, 엽서 등) 판매, 소식지 광고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수입금액은 실비 이하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함께 기부금(후원금, 협찬금 등)이 혼합되어 수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중소규모의 공익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도 못하거나, 인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측하거나 구분경리 등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신설)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은 제외한다. 16. ---------- 제15호까지의 ----------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좌측의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 효율성 측면에서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실질적인 세제상 혜택을 주는 개선안이 될 것이며,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일실되는 세수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임대사업 등을 제외하여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좌동) 1.---------- ---------- ---------- ---------- ---------- ---------- --.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용역은 이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시적, 실비 공급의 경우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대가와 기부금이 혼재되어 실비 이상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고, 실제 중소규모 공익법인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음. - 따라서 법적안정성과 납세효율의 측면에서 일시적이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사업은 면세로 포함시키도록 함.

2.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관련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⑩ (좌동) 2----------. ---------- ----. 다만, 제50조의3 제1항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시정요구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 동일)	- 소규모 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개설의무는 알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 ----------	-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공시나 세무확인 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

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 ---------- ---------- 다만, 제50조의3 제1항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시정요구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지 못하고 세무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고서 제출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제출은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법인이 미제출시 제출과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략).....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좌동) 3) (삭제)	- 자산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이미 국세청 홈택스에 재무제표 및 기부금 모금액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수로부터 모금을 하지 않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성도 없으며, 특히 소규모 단체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음.또한 최근에는 홈페이지 보다 SNS를 통한 홍보가 대세. 따라서 세법적 목적에서 개별 홈페이지 구축을 강제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시민사회포털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사회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80조 제1항 제5호 바목기부금대상민간단체 관련 규정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요건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⑥ (삭제) ⑦ (삭제)	- 현행법상으로는 주무관청에 일차적으로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고 이를 주무관청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 그러나 보고의무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의무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공시의무내용에 추가 정보(선거운동 여부 등)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주무관청과 국세청이 동시에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음 다만 5억원 미만의 자율공시대상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게 됨 - 따라서 행정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공익법인의 중복된 의무사항이행을 줄이게 되면 더 많은 공익목적활동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임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하 삭제)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③ (삭제) ⑤ (삭제)	개정취지는 법인세법과 상동

4.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의 전환

현 행	개정내용	개정이유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삭제)	-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부금세액공제 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함. - 개정안의 내용은 세액공제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령을 참고함.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②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부록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3

발의연월일 : 2017. 7. 12.

발 의 자 : 이재정ㆍ김종대ㆍ김해영
김철민ㆍ신창현ㆍ정성호
권미혁ㆍ김정우ㆍ윤관석
박남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년)에서 출발하였고, 2006년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복잡한 등록절차를 따라야 하고, 각종 의무가 부과되며, 기부금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기부금품 모집뿐만 아니라 기부 참여도 어렵게 하여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의 증가와 기부금품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최근의 기부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 위법한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다하여 기부문화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며, 위법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집,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행위를 기부금품의 모집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등록 대상 기부금품의 금액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계획을 모집기간에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모집금품 사용계획의 경우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한 자 또는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한 자는 14일 이내에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청의 지도절차를 둠(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함(안 제4조제3항).

마.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바.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삭제).

아.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의2 신설).

자. 형벌과 양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벌에 규정된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제18조).

법률 제 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을 “공개된 장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을 “모집방법, 모집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하여야 한다”를 “하되, 모집기간에 모집을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고”를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

의 죄) 및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를 범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집행유예를”을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원이”를 “상근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신청인에게”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이 경우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한 자는 각각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준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자가 등록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는 할 수 없으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모집중개자의 의무) 모집중개자(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등 모집자에 관한 정보
2. 모집자와의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수수료
3.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및 모집기간
4. 모집금품의 총액·수량 및 사용명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3(공익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중 “접수장소 등”을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4조제2항에”를 “제14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익명기부”를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익명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2항 후단을”을 “제4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를 “상근임원 중 제4조제4항제6호에”로,

“임원을”을 “상근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4조제2항에”를 “제14조의2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를 “당초에 제출된 모집계획상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로 한다.

제11조 중 “말소하려면”을 “말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모집비용에 충당하는”을 “해당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를 “당초에 제출된 모집계획상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제목 중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을 “(장부·서류의 비치와 보고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을 “5억원 이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으로,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을 중단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목표액과 모집 금액·수량 및 이에 대한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집자는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 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로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모집상황 등의 공개의무) 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을 중단한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집목표액과 모집 금액·수량 및 이에 대한 사용계획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은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명세는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

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등록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3.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의2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공개하여야할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모집중개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공개된 장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는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3천만원---------- ---------- ---------- ---------- ---------- ---------- ----------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모집방법, 모집기간----------. ----------하되, 모집기간에 모집을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후단 신설>	3. ----------. 이 경우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

	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한 자는 각각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준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자가 등록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는 할 수 없으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된다.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및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를 범하여 금고----------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6. -------상근임원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⑤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제4항에----------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5항에----------.
<신 설>	제4조의2(모집중개자의 의무) 모집중개자(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등 모집자에 관한 정보 2. 모집자와의 계약내용 및 이

	에 따른 수수료 3.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및 모집기간 4. 모집금품의 총액·수량 및 사용명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공익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법인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소득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삭제>

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의2에----------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익명기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3항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조제4항----------. ---------상근임원 중 제4조제4항제6호에----------상근임원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②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 ---------- ---------- ---------- -. ---------- ---------- 당초에 제출된 모집계획상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 ----------.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 ----------말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 ---------- ---해당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당초에 제출된 모집계획상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생 략)	제14조(장부·서류의 비치와 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을 중단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목표액과 모집 금액·수량 및 이에 대한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5억원 이하이면---------- ---------- ----------.
<신 설>	④ 모집자는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로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3항 또는 제4항----------.
<신 설>	제14조의2(모집상황 등의 공개의무) 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을 중단한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집목표액과 모집 금액·수량 및 이에 대한 사용계획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은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명세는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등록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삭 제>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삭 제>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신 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3.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의2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

	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1.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공개하여야할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모집중개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록3>

기부활성화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시민사회발전TF 》
2017.8.18.

기부금품법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이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기본방향

○ 민간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세수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함. 그러나 기부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내놓는 일임. 기부금 세제혜택을 통해 포기하는 세수보다 기부금이 정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간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높아져야 함.
- 공익의 성격과 법적의무가 상이한 종교기관을 일반 기부금단체와 구분하여 관리.
- 지정기부금 단체 중 사회적 불신의 원인이 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필요

○ 중첩되는 행정부담 간소화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부처별 보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보고 및 기부금품법 등록과 보고 등 비영리 기관의 행정의무 중복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비영리기관의 운영 효율성 높여 나가야 함.
- 사회복지, 종교, 병원, 학교 등의 대형 비영리 법인과 대규 등과 중. 소형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부담 차별화

- 비영리 회계기준을 정비하고, 보고양식을 표준화

: 비영리 회계기준 정비 : 국제기준에 부합, 기관 특성 반영

: 정부 회계 보고양식 표준화 : 국세청, 지자체, 기재부 보고양식 표준화를 통한 행정중복 간소화

- 행정당국의 명확한 가이드 제시

: 세법와 기부금품법에서의 운영비(행정비, 간접비),

: 모집행위, 공개장소/ 회비와 기부금등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위수탁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불명확

* 국세청 공시자료를 가이드스타에만 제공하는 것과 이후 재지정방침도 문제. 이는 국가기관이 체계적인 통계데이터를 구축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가공,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기부시장의 자발성과 역량강화**

- 민간기부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생산, 자체 규율을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그리고 심각한 기부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비영리통계구축 : 국세청과 각 정부부처가 수집하고 있는 기초데이터를 취합하여 전국 비영리현황, 기부금 통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비영리통계 구축 (전담기관)
- 비영리의 자발적 투명성, 책무성 강화활동 지원 : 공익법인,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재단법인 협회, 분야별 단체 협회 등 엄브렐러 조직(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특별지원
- 정부의 기부대상 다양화 독려메시지

○**정부주도 모금에 대한 엄격한 경계**

- 정부, 지자체 출연 기관의 민간모금이 확대되고 있음. K재단, 미르재단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 혹은 댓가성 기부금임.
- 준조세적, 댓가성 기부금은 그 상관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지만 한번 작동하면 기부를 강요당하는 측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함.
-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의 모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조항을 악용하여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민간기부금을 유치하고자 함. 이에 대한 행자부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 요구됨.
- 최근 5년간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기관과 기부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 기부금액, 사용내역 공개

2 세부과제

□ 기부금품법 개정 (개정안 별첨)

○주요내용

-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집,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행위를 기부금품의 모집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등록 대상 기부금품의 금액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계획을 모집기간에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모집금품 사용계획의 경우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한 자 또는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한 자는 14일 이내에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청의 지도절차를 둠(안 제4조제2항 신설).

-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함(안 제4조제3항).

-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삭제).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의2 신설).
- 형벌과 양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벌에 규정된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제18조)
- 중소 공익법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 규제적 접근에서 지원적 접근으로 행정당국의 접근법 전환

□ 관련 세법 개정 (개정안 및 설명자료 별첨)

○ 기본방향

- 중소 공익법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 규제적 접근에서 지원적 접근으로 행정당국의 접근법 전환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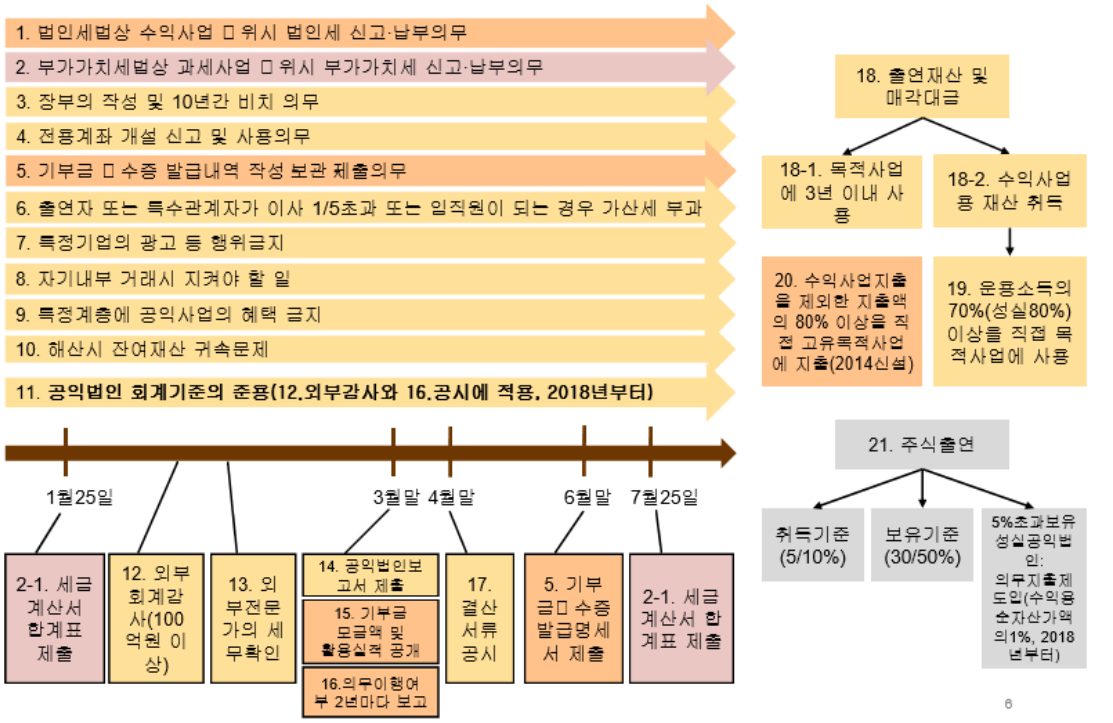

출처 (2017, 변영선)

□ 고액의 자산기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부동산기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증여/상속세 감면

- 유산기부(계획기부)는 대체적으로 자산의 증여 또는 상속과 연계되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됨. 단순 기부라기보다는 자산의 증여/운용/처분을 통한 목적사업 이행과 이해관계상충 등의 내용을 계약에 담는 형태.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적요건, 자산의 운용관리, 재무회계적 기준 준용 등을 잘 이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보장되는 대형비영리기관 또는 중간지원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만 활성화됨(황필상 주식기부 세금연대채무 224억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기부전문성 부족에 있음).
-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자산은 60%이상이 부동산, 40% 미만이 기타 유동자산으로 구성됨.
- 따라서 증여/상속 시 집중 관리되는 부분이 부동산. 자산기부를 고려할 때 부동산기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한 기부법조항 마련만으로는 결코 활성화할 수 없음. 특히 부동산의 수용/관리/처분/가치상승(재개발 등)/현금화 등에 있어 전문성과 구조적 보완(임대/매매관리, 담보, 지분관리, 잉여보유자금, 정부정책 등)이 필요함.
- 현금자산은 신탁, 보험, 연금보다는 '즉시기부'가 편리하고 기부목적 실현 등에도 장점이 크며 이미 기부규모의 대부분이 현금기부가 차지하는데 비해 부동산/주식기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한 수준임. 자산의 증여/상속 시에는 현금유동성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상속세를 줄이면서 기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함. 조특법 안에 부동산 기부시 상속/증여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마련해두고 상속과세범위 조정을 한다면, 현재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기부동기가 될 것임

○ 부동산기부/주식기부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시스템(자산기부센터) 도입

- 유산(계획)기부를 담는 방법(vehicles)에 유언공증(유언장), 신탁, 연금, 보험 등이 있는데 기부자가 생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장기적

인 자산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함.

- 미국 등의 경우 신탁, 연금, 보험은 상품자체에 자산(현금 및 부동산/주식 포함)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미리 반영하고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법 및 세법제도 안에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이용자(기부자)의 선택이 용이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신탁, 연금, 보험은 주로 현금만 다루고 있고 기부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음.
- 일부 대형대학은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 '고비용/고난이도'를 감수하고 부분적으로 신탁/연금/보험 형태의 기부를 받지만 사회복지/시민사회/문화예술 등에서는 적용이 어려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제안함.

⇨ 기부금품법 또는 관련 법 안에 '자산기부센터 설치' 조항 검토

⇨ 외국의 계획기부 운영 사례와 한국 계획기부의 활성화 방향성의 실행적 연구

⇨ 관련 법/제도(기부연금법, 기부보험법, 공익신탁법 등) 도입 및 개선

: 기부계약과 연금지급계약을 동시에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해소.

: 법무부의 공익신탁 설립 허가,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 쉽게 신탁설립이 가능하도록 유도. 현재,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제한하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의 중심에 있어 비영리기관이 주도적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기 어려움. 동시에 수탁자 운용수익을 0.03%로 제한하여 금융기관에서도 수익이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저렴한 비용(수수료)으로 비영리단체들의 계획기부를 상담 및 지원

□ 법정기부금 제도의 개선 및 보완

- 현재 기재부로부터 전문모금기관(법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은 곳은 2개 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
-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단체들이 자체모금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을 배분사업으로 충족시킴
- 배분기금의 대부분이 주요 1개 기관에 쏠려 있고, 배분사업 관리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따라서 법정기부금단체의 진입장벽은 완화하고, 다양한 배분기관에서 기금을 모금 및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부분 수정하기를 제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2의 4항에서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이어야 하는 내용을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단, 법정기부금 허가 이후 10년에 한해서 연간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기관은 100분의 15, 연간 모금액이 10억 이하인 기관은 100분의 20일 것일 것'으로 수정 제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2.2.2., 2014.2.21., 2016.2.12.>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부록4>

보조금 제도 혁신 시민사회의견

《 시민사회발전TF 》
2017.8.25.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배분 및 관리, 평가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온 바,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민간경상보조금 일반 현황

○ **공급자 측면 (집행·관리상 문제점)**

- 선정의 어려움(허위·부정, 선정오류 등 방지), 편중·중복 지원, 중앙·지방의 지원대상 및 보조사업자 등 부적격자(grant-hunters) 식별, 부정수급·부당집행·부적정. 정산 등 관리에 대한 행정 부담이 존재

○ **수요자 측면 (재정투자의 심각한 비효율성 노출)**

- 단년도 사업예산제 하에서, 예산액 일괄배분(할당방식), 집행일정의 비탄력성, 정산 등 관리절차 강화로 인한 업무부담 등 공급자 중심적인 지원방식의 한계 노출
- 특히 정부주도적인 공모사업으로 인해, 민간 파트너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갈등 및 조성시설의 유휴화를 초래
- 정부의 성과에 대한 조급함(공무원의 순환보직제)과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미스매치

○ **지방 분권 및 사회혁신 측면**

- 중앙과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 중앙의 칸막이 강화(관련 사업조직

의 확대) 및 지방의 경쟁적 유치(자치단체장의 실적 등) 및 재정 책임성 회피(소위 '눈먼 돈')

-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 보조금 매칭의 부담 등 지방 재정지출 증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증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 등(국고보조금 보다 지방교부세제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자율성 확대 필요)

2 기본방향

○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지원패러다임에서 성장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협력패러다임으로 전환**

-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익활동 지원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 의해 조성된 공공의 자원을 공공기관(公)이 사용하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共)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것임.
- 따라서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전환 필요

○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및 부담 완화**

- 행정관리의 초점을 '비용'에서 '결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비영리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지표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영리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효과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분야 선정단계에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
-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해소 및 증빙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기재부 및 행자부의 집행지침의 개선

- 109 -

○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개선하여 보편적인 지원확대**

-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편중된 예산지원 개선과 공정성, 책무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일반 보조금 집행시스템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업의 목적성, 효과성, 책무성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

○ **중장기적인 보조금 규모 및 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로드맵**

- 직접지원 중심에서 단체에게 필요한 통합정보망 구축 및 국가차원의 연구, 조사, 통계, 국공유시설 공공인프라 개방 확대, 다양한 재원조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단년도 사업예산제 하의 균등할당, 일정의 비탄력성 등 공급자 중심적 행태를 극복하고, 수혜자(민간단체)들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보조금 vs 투융자)으로 지원 필요

- 단기적(일회적) 프로그램 지원에서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인큐베이팅 지원, 단체 지원 육성중심에서 네트워크 조직, 시민사회내 자조적 엄브렐라조직, 중간지원조직역량 강화지원
- 회계중심의 계량적 성과 평가에서 사회적 영향력(impact)평가로의 전환 준비
- 지원전담조직을 통한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 확대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상 근거 마련

○**보조금과 관련한 정부-시민사회 협약추진**

- 보조금 지급주체(정부)와 사업시행주체(민간단체)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 수급자 선정 이후 관리에 대한 상호 협의 결과를 반영한 협약 체결
- 이러한 협약 등을 통해 보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과 보조금 부정수급, 부당집행, 부적정 정산 등에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중장기 개선방안과 보조금 관리법 및 지침 개정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보조금 규모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기준 행안부 70.62억원(보조금 64억원, 평가,시스템운영,관리 6.62억),광역시도 106.76억원**

- 200개 단체 선정, 평균3,200만원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부예산의 0.13%**

- 2010년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227억원 정도로 정부예산의 0.13%(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산액 특별회계 포함하여 248조 6,533억원(2010,조홍식)
-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1,049억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단체 지원액의 32.5%
- 소상공인진흥원(565억원, 53.9%) 과학기술인공제회(600억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120억 9천여만원)등 공공기관적 성격조직 및 특정 단체 편중 지원

○**행안부와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익지원사업의 경우, 감소와 정체 추세**

-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50억 원 지원, 총 보조금의 50%는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에게 행자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나머지 50%는 시·도를 경유하여 지원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 삭감으로 매년 100억 원씩 지원. 동일하게 지방정부에 5:5 배분 방식으로 지원
-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직접 49억만 지원. 시도에 50%씩 배정하던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공익활동 지원 사업 규모가 축소. 이후 행자부와 시·도 지자체는 보조금 예산 분리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억 원으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확대하는 추세였지만, 2014년 135억 원으로 지원액 다시 감축. 지원대상중 촛불단체 제외, 북한인권 단체 등 증가

(단위 천원)

주요 국가 비영리부문의 재원 구성 현황

	정부지원금	민간기부금	수수료 수입
Korea	**29%**	**20%**	**51%**
Netherlands	63%	5%	32%
New Zealand	25%	20%	55%
Norway	36%	7%	57%
Portugal	40%	12%	48%
Spain	32%	19%	49%
Sweden	29%	9%	62%
United Kingdom	45%	11%	43%
United States	40%	15%	45%
(21국 평균)	**45%**	**10%**	**45%**

출처. Salamon et al 2009, 주성수 외 2014, 17 재인용

□ 개선방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기초조사와 통계필요

- 민간경상보조금 중 비영리 공익활동지원 정의에 따른 정부 예산작성지침마련
- e나라도움의 보조금 통계분류체계 개선

○ 공익활동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2.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자율권 침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불법시위를 이유로 공동협력사업 선정 취소

-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소위'불법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 한국여성의전화가 확인서를 거부하자 여성부가 공동협력사업 선정을 취소함.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정부가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원에서 배제
-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지원배제사유가 되거나 거꾸로 지지를 댓가로 지원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

○기재부 관리지침에 따른 불법시위 주최단체 지원배제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른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에 대한 지원제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와 보조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행정행위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임

▢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13조 4항 3.폐지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3. 과도한 행정 규제 및 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3.1 보조금 사업진행시 자부담 편성의무화 및 자부담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에 따른 단체의 부담 가중

○자부담 사업비를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단체의 사업수행상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한 침해요소. 행정의 기준으로 집행이 어려운 비용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허용 필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따르면 자부담 편성비율 여부가 선정기준의 요소로 작용함. 취약한 재정기반을 가진 단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므로 사업의 성격,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자부담 편성 여부에 대한 유연한 기준 필요

○사업정산시 의무적 자부담(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한 자부담액의 차액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자부담 집행기간을 보조금 집행기간(11월30일 종료)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자부담 관리를 보조금 관리방식과 동일하게 관리, 통제함으로

써 단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함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7조(자부담의 사용 및 환수) 조항 참조

○보조금 사업선정결과 발표 이전에는 자부담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업의 사전 준비 및 기획을 위해 필요한 예산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함. 또한 행정절차로 인한 보조금의 집행이 늦어질 경우 사업의 수행자체가 늦어지게 하는 역효과가 나타남

○자부담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범주에 대한 재고 필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조(목적), 3조(기본방향), 5조1항(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도 위배됨.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는 휴지기와 환차손 등에 대한 자부담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의 별도자체 자금 투입율이 높아짐. 휴지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는 별도 자체자금을 투입하나 하였으나 사업비매칭 자부담으로 불인정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환차익은 정부로 반환하고, 환차손 보전은 민간단체가 부담

3-2 보조금 분할지급에 따른 사업운영의 자율성 약화

○ 사업집행시 보조금을 3회 분할교부(1차 50%, 2차 30%, 3차 20%) 방식으로 지급.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부금을 분할교부에 따라 단체는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됨.

3-3 보조금 지원사업 약정체결 제출 서류의 간소화 필요

○보조금 지원사업은 용역에 의한 계약사업과는 운영의 목적, 방식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시 필요한 서류 및 보조금 교부방식은 용역 계약과 같은 형태의 관점에서 진행됨.

- 용역계약은 행정기관의 목적에 의한 사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은 단체가 추구하는 공익적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므

로 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 현재의 지원방식은 지원보다는 행정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임(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청렴이행서약서, 이행약정서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장치 과다)

○약정체결 서류 중,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승낙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반복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생략 필요

3-4 인건비 집행 기준의 개선

○ 다수인 출강 지급기준 상한선 조정 필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영역간 협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수의 강사진이나 토론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행정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이런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총액(50만원~70만원)을 1/N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업참여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산술적 방식의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불합리한 지침임

○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강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개선 필요

- 최근 워크숍 형태의 강의진행이 많은 상황에서 현실에 부적합한 지침

○ 회의참석비 지급시, 1인 1일 1회에 한한다는 규정 조정 필요

- 하루에 다른 성격의 회의가 2회 진행시 각각의 회의참석 수당 인정

○ 단체 임직원, 컨소시엄 임직원(비상근 포함)에게 사업비 중 인건비 지급불가조항 개선 필요.

- 임원의 경우,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음에도 강의 사전 준비 및 강의 진행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지급을 제한

○ 단순인건비 최저임금기준 미적용에 따른 노동법 위반

- 인천시가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5000원으로 책정(2016년 최저임금 6030원)

- 노동부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해석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974)

3-5 사업비 집행 기준의 개선

○ 최소경비 편성 원칙 개선 필요

- 사업비 중 물품구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물품구매를 우선하라는 원칙과 위배, 최소경비 편성으로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의 구매 증가를 피할 수 없음.

○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용역성 경비 지급 불가 지침 개선

-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 임직원/단체와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시 전액 환수 조항 수정

- 일상적으로 공지된 대관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경우 행사장과 단체 사무실간의 이동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비용 절감

○ 은행이체수수료 사업비 포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타 금융기관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항목 편성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수수료를 다시 재입금해야 하는 행정상의 불편이 발생함.

○ 사업선정과정에 예산 조정 절차 시행 필요

- 사업 선정 이후 예산 삭감시 사업실행계획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과정에서의 예산 조정 필요

3-6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운영개선

○ 기재부는 17년 7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면시행

- 연간 국고보조금 규모 자체가 크고[1] 누수 차단 필요성 증대. 투명성

1) 연간 약 60조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용. 2017년 59조6천억원. 이는 총예산(400조5000억원)의 14.9%.. 2016년 총예산 386조7000억원의 15.6%인 60조3000억원이 보조금. 올해 국고보조금 59조6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30조6429억원(51.4%)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 그 뒤로 농림수산(8조1775억원, 13.7%), 문화·관광(4조5693억원, 7.7%), 환경(4조5294억원, 7.6%) 등 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예산평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의 처리 전 과정 정보화하여 통합관리

- 시스템 운영 혼선과 등록과정 집행후 과정이 복잡하여 실무력 낭비
- 결제는 모두 신용카드(거래실적 없으면 발급안됨) 반드시 사용(신한은행에서 신용이 낮은 단체들에게 체크카드 발급). 부정기적 수입으로 신용도가 낮은 문화예술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신용카드발급 제한
- 여전한 개인정보 과다 요구 : 이력서, 신분증사본, 계좌사본 등.
- 기존 사용 시스템간 통합 과정의 문제과 민간위탁조직 적용상 불합리
- 국내용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무리한 해외적용은 보조금의 원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e나라도움은 주민등록정보가 없는 개도국의 경우 시스템 조건에 맞춘 인위적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중복수급 방지가 원천적으로 어려움.

: 국제개발 보조금은 예치성이 아닌 비예치성으로, 체크카드 실시간거래가 불가하고 선송금 후처리 방식을 사용함. 이에 전용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적용 불가.

: 국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작업이 대폭 감소 가능하나, 현지는 e나라도움을 적용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오히려 자동화시스템을 위한 수작업이 대폭 증가

□ 개선방안

○일차적으로는 행자부 지침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참여 TF구성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및 e나라도움 운영개선을 통한 점진적 시행

○전반적인 보조금제도 혁신을 위한 국가-시민사회협약추진

4. 공익활동 운영비. 인건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공익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정부가 선정한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추진 사업위탁 등 민간위탁사업, 기금사업에서는 지급하는 인건비를 공모사업에서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단체의 경우 활동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 그 밖의 경비 보조를 법률에 명시

예)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과 함께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단체에게 이중 부담을 시키는 것임

○문예진흥기금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보조사업비 자부담을 폐지함과 동시에 보조사업과 직접 연관된 인적 경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함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

보조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

예술단체에 대하여 일괄 시행되어 온 보조사업비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현행 10%)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 지정하여 공시하고 이러한 '자부담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부담 노력'을 사업실적 평가 요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 완화

예술단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을 완화합니다. **보조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면 인적 경비나 운영비로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U 20국 재정수입원 : 2014년

영국 Compact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지침

Figure 11. NPI revenue structure, 20 EU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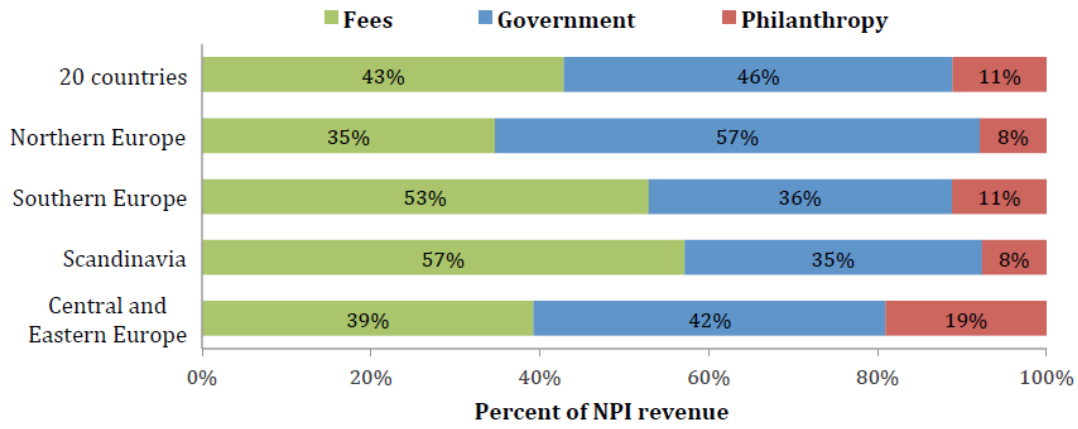

☐ 개선방안

○ 일차적으로 사업비내 인건비 지원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 마련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 폐지

제8조 비용에 대한 이해 : 재정지원 기관들은 시민사회조직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으로 확인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지원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실행>

8.1 재정지원 신청서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8.2 자원봉사자의 관리 비용의 지불 등 자원봉사 활동 관련 비용의 상환을 수용한다.

8.3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비용 세부항목 요청을 하는 경우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 모든 섹터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9조 정책결정 : 선정 기준은 재정지원 기관이 최고의 금전의 가치를 달성하는 가장 적합한 시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행>

9.1 3년 또는 그 이상의 재정지원을 실행한다. 이것이 최고의 금전의 가치를 공급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 경우, 정부는 다른 대안적 재정지원 방안들이 동일한 결과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9.2 재정지원의 결정은 계획된 사업 개시일보다 최소한 3개월 앞서 이뤄져야 한다. 3개월 규정을 벗어난 결정에 대한 정당화에 설명해야 한다.

9.3 입찰에 실패한 조직들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②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5.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편중지원해소와 책무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운동단체 지원방식 변화

- 1999년까지 : 운영비 정액보조 방식으로 지원
- 2000년 ~ 2009년 : 공모를 통해 1억원 안팎의 소액이 지원
- 2011년부터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2017년 새마을운동 : 86억 1,100만원, 자유총연맹 : 2억5,000만, 바르게살기 : 5억8,500만원)

○특혜성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의 형평성, 공정성 훼손

- 2017년 공익활동지원사업 202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체 64억원으로 한단체당 평균 3200만원인데 비해 단일조직에 대한 편중지원
- 법에 의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조세감면, 소득계산 특례 적용 등의 특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2017년)

1. 밝고건강한국가·사회건설

1	2017	[0001] 새마을리더십 교류협력 함양	[320-01] 민간경상보조	405,000
2	2017	[0002]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320-01] 민간경상보조	296,000
3	2017	[0003]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지원	[320-01] 민간경상보조	585,000

22.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 -> 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보조 2억5천만원

26. 새마을운동지원

1	2017	[0001]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320-01] 민간경상보조	470,000

27 새마을운동 지원

1	2017	[0002]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개 · 보수	[320-07] 민간자본보조	900,000

28 새마을운동 지원

1	2017	[0003]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등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4,720,000

29 새마을운동 세계화(ODA)

1	2017	[0001] 새마을 초청연수	[320-01] 민간경상보조	1,820,000
2	2017	[0002]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320-01] 민간경상보조	1,576,000

○**사업의 선정, 집행, 평가과정의 불투명성과 책무성 결여**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편파적 지원이 문제로 제기되자 공모사업에서 '국민운동단체 중복지원'을 이유로 사업참여 자격을 제한. 그러나 또다른 지원방식이 되는 민간경상보조로 대신해, 오히려 국민운동단체들은 공모 경쟁을 거치지 않고 재정지원을 받아옴. 뿐만아니라 일반 공모사업과 달리 사업 및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불투명성 계속됨
- 2013년,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연도 말에 몰아서 집행, 대규모 전시성, 일회성 사업, 준비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수익사업 수입과다 및 특혜성 지원**

- 자유총연맹은 자산은 1,324억원(토지 374억원, 주식 및 출자지분 867억원)으로 연간 수입액 중 공익사업수입(79.7억원)보다 수익사업 수입(94.4억원)이 더 많음.
- 새마을운동의 경우, 중앙 및 전국 시도 지회가 수익사업 유형과 공익사업 유형으로 양분.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84개 중앙 및 지회들 중 절반 이상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16개 시도의 경우 총수입 중 수익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사업 유형은 중앙회(67%)를 포함해 경기도(74%), 충북(100%), 전남(59%) 등 네 개이며, 나머지가 공익사업 유형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도 수익사업 비중이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39%에 이름.

국민운동단체에 수입원 (2015년)

	공익사업 : 수익사업	공익사업 수입금	기부금(1) 대중모금	기부금(2) 기업/단체	정부 보조금	기타 사업수입
대한노인회	99 : 1	152억원	1%	2%	95%	0
(사)자유총연맹	46 : 54	79.7억원 (총수입 174억)	25%	23%	52%	0
새마을운동중앙회	33 : 67	64.4 (총수입 198억원)	0	21%	51%	28%

□ 개선방안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과도한 국고지원 중단과 보편적인 지원체계로 편입

- 국고지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공모, 집행, 평가시스템을 준용하는 책무성 부여

○정부 지원에 따른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

-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음
- 그동안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투명성, 책무성 평가

붙임1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개선사항

연번	조항	조항 내용	개선 내용
1	제1장 총칙 〉 제4조의 2 〉 ④	○보조금 예산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절차와 예산 항목은 공모지원중심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음. - 현재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침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세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과정을 선행이후에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의 경우, 민간위타기관과 행정과 여러차례 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괄적용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	제4장 〉 제13조 〉 ①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의 경우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회원의 회비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재무안정성과 자부담 능력이 영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적 목적 추구에 관한 사회적 기여의 인정이 선정기준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제4장〉 제13조〉 ④ 의 3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기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 (사례) ‘한국여성의 전화’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불법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요구 받음. 확인서 거부하자 공동협력사업 선정 취소, 한국여성의 전화 행정소송제기, 승소.

붙임2 행자부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선사항

연번	조항	조항 내용	개선 내용
1	II.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부담 비율 미충족시 지원사업선정배제 - 최소 자부담 비율 7% 의무 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인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에 반하는 지침 - 규모가 작은 단체 및 신규단체 및 공익활동 스타터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자비부담 의무화 규정 삭제
2	II.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2.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배제 - 최근 3년내 불법시위 주최, 주도단체 제외	- 지원금지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작용 -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
3	II.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2.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국고보조금 10% 이상 자부담 예산시 총점에 가산점 부여	- 다수의 비영리민간단체에게는 불리한 심사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인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에 반하는 심사기준
4	II.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신청전 자부담 사업비 입금 의무규정	- 관리감독 중심의 지침으로 - 민간에 대한 상호신뢰(파트너십)를 넘어 행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지침
5	II.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4. 보조금 교부 신청 검토,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교부신청 및 사업실행계획에 대한 보완요구 불응시 사업선정 취소 규정 및 2일 이내 보완 원칙	- 보완요구는 행정과 민간의 상호협의사항이지 선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이는 일방적인 행정의 요구를 민간이 수용하라는 강압적 태도임 - 짧은 보완기간 역시 행정의 요구에 대한 보완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6	II.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5.사업집행 및 관리	○자부담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 집행원칙	- 행정의 집행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민간의 공감대가 있음 - 자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나 행정의 기준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집행의 유연성이 필요 * 행자부도 기부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의 경우 반드시 자부담 편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동일한 기준집행원칙인지 의문임 - 특히 자부담을 이행보증료 수수료 지급, 소액의 특근매식비,간담회비 , 간식비, 교통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게 한 것은 민간의 자부담 지출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로 보여짐

연번	조항	조항 내용	개선 내용
7	Ⅱ.사업추진단계별 관리지침 〉 6.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최종평가 제출시 자부담 비율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자료 제출의 목적이 불분명함 - 행정의 관리감독적 사고에 기반한 불필요한 행정사항으로 보임
8	컨소시업 사업 표준협약서	○ 컨소시업 참여단체간 책임성 확보를 위한 협정서로 행자부제출 ○ 제8조의 협약의 변경시 행자부 승인 요청	- 협약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상호 책임 및 신뢰에 기반하여 작성 - 민간끼리의 협약조항에 행자부의 승인절차와 불이행시 사업중단에 대한 항목을 반영한 것은 협약이 아닌 '각서'적 성격임 - 컨소시엄은 참가단체들의 자원과 상호 파트너십에 기초해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란 참여단체의 업부분장, 참여비율등에 대한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은 협약의 기본원칙에 위배됨
9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2.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경비 편성 금지	- 연구용역 등 위탁사업에서도 인건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체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특히, 단체 내부의 전문성 활용에 결정적인 장애조항임, * 참여율에 의한 단체직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
10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예산편성기준표 상 다수인 공연	○ 평균 6만원~9만원 지급 기준	- 이는 회의참석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비용이며,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 산출된 비용임 - 점차로 동시간대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워크샵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문강사비 수준의 비용책정이 필요함
11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자문료	○ 단위사업당 20만원의 자문료 책정	-자문의 참여단계는 다양함. 기획-실행-평가-환류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자문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임 - 단위사업당 20만원이 자문료 지급은 외부 전문가의 단체참여를 제한하는 원칙임 - 회의참석비와 동일하거나 혹은 강사비 수준의 비용책정이 합리적임

붙임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문제점 사례

구분	항목	연번	사 례 내 용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파트너십 마인드 부재	1	○거버넌스 파트너이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공적 인프라로 보는 마인드 없이 보고받는 쪽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된 활동보고 및 회계프로그램
		2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도 운영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 진행하면 다음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없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행사된 '재량'	3	○여성부가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상의 "불법폭력 집회, 시위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이라는 조건
		4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소위 '불법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 한국여성의전화가 확인서를 거부하자 여성부가 공동협력사업 선정을 취소함.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함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행정지침 (행정의 비일관성)	5	○(사)대한복지000 부산지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서류의 문제로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고 재정지원 원칙이 공무원마다 달라졌으며 공무원 개인의 개인 업무과다로 인한 실수로 재정지원을 늦게 지급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어 2013년에 이동목욕사업을 반납함
	민간단체에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추가 지침, 지침 변경의 문제	6	○공모사업과 관련된 책자를 제작하고 최종평가서에 이에 대한 지침서 내용에 준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조금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지침서에 없던 책자 제작비용이 조달청 기준보다 높다고 문제제기 하거나 지출결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증빙서류를 더 많이 요구함
	사업비 항목의 경직성	7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은 비목에 따라 기준과 사용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 북한인권학생연대에서 모의유엔대회를 숙박형식으로 2박3일간 진행하고 심사위원은 참가대학생들의 비공식회의까지 참석했지만 예산 지침에는 2시간 30분 초과 시 15만원의 회의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집행지침의 획일성과 위반 시 제재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문제	8	○보조금 환수가 동일한 사안에도 정부・지자체 방침과 담당 공무원에 따라 매년 다르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후도 지침 위반을 이유로 함
		9	○보조금 유용・횡령의 실질적 범죄행위는 적발하지 못하면서 기준 단가(5대 항목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교통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집행지침 위반을 "부당집행"으로 환수함